

요양비 지급청구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 요양비 처방전 발급기준

- (당뇨 등 소모성재료)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구입일자를 사용개시일로 등록
다만, 급여종료일 전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급여종료일 전 30일 이내 구입한 경우 사용개시일을 이전 급여종료일의 다음날로 등록
 - (산소치료 등 기기대여 - 양압기 제외) 처방기간 종료일 전 90일 이내 또는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처방기간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
 - (양압기 기기대여) 처방기간 종료일 후 30일 이내 처방전을 발급받아 종료일 후 30일 이내 대여한 경우에는 처방기간 시작일을 이전 처방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등록
다만, 순용기간 중 처방종료일 전에 순용한 경우 순용기간 후 처방전 발급 인정
- ※ 급여기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. 이전 처방기간 종료 전에 신규 처방전을 발급받아 처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처방전 발행일을 처방시작일로 인정

2 요양비 지급청구 구비서류(세금계산서)

- (시행일) 2020. 7. 1. (2020.7.1.이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기준)
- (유예기간) 2020. 6. 30.까지

구분	구비서류	비고
일반사업자	세금계산서	거래명세서 불인정
법인사업자	전자세금계산서	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
간이사업자	현금영수증(카드영수증), 거래명세서	
공통사항	- 전액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•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* -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• 카드전표(현금영수증)+거래명세서*+세금계산서(공단부담금액) *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(품목 등)을 알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	

※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(세금계산서 등), 동법 제34조(세금계산서 발급시기)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사용기간을 명시(비고란)하여 재화를 제공한 날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한 경우 인정

3 기타사항

- (환자등록)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되며,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, 우편 소인이 찍힌 날,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. 또한, 환자등록일로부터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이 가능
- 임대기기(가정산소 제외)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기기 변경 외에는 월 합산 청구
- 양압기 마스크는 회계연도 기준(1.1.~12.31)으로 연간 1개 지원
- 폐업, 휴업, 등록포기 등 요양비 등록업소 탈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및 신고
-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업소탈퇴 신고 후 공단에 제공업소 신규 등록 신청
- 임대기기(산소,인공호흡기,기침유발기,양압기) 치료서비스 표준계약서에 의거 수급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기의 파손, 분실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.